국고채권 매입(2025-005) 관련 업무참고 사항

□ 처리 순서 : 입찰(D일) → 보유기간 확인서 제출(D+1영업일)
→ 채권반환 및 국채매입 신청(D+2영업일)

□ 입 찰(D일)

- 응찰금리 개수 : 기관별로 종목당 7개까지 각각 다른 금리로 응찰 가능.
단, 7개 이하라 하더라도 동일 금리로는 응찰 불가

- 입찰 신청(BOK-Wire+)

ㅇ 증권경쟁입찰
→ 증권경쟁입찰 내역 입력관리
→ 국채매입 입찰정보 조회 및 응찰
※ 매입입찰일 : 2025. 11. 19. 국채매입회차 : 2025-005

□ 보유기간 확인서 제출(D+1영업일)

- 낙찰된 모든 종목에 대해 작성하며 국채거래용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한국은행 국채기금팀 앞으로 FAX 송부하고 전화로 통지할 것
(Tel. 759-4740, 4754 Fax. 759-4750, 4753)

o 보유기간 확인서는 세무증빙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전산원장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작성할 것(특히 **이동평균법을 따르는 기관은 매수일 산출에 유의**)

□ 채권반환 신청(D+2영업일)

- 국채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된 국고채권이 한국은행 국채등록부상에 낙찰기관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므로

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국고채권은 매입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eSAFE시스템의 채권말소등록확인화면에서 먼저 입력해야 함 [한국예탁결제원 채권등록부 ☎ 3774-3392, 3393]

□ 국채매입 신청(D+2영업일) :

– 원천징수액이 발생한 기관은 국채매입 실행 전 반드시 아래의 한은 금융망 화면 또는 한국은행 국채기금팀(759-4740, 4754) 앞으로 전화하셔서 금액을 확인 후 신청 요망

– 신청(BOK-Wire+)

ㅇ **증권 → 국공채 → 정보조회 → 국공채 환매정보 조회 (화면번호 070606)**

<주요 입력내용>

– 상단

① 증 권 종 류 : 07(국고채권)
② 종 목 명 : 보유기간확인서상 대상증권종목회차
③ 신청인구분 : **"3(금융보험법인)"**으로 선택
④ 자사신탁위탁혼합 : 1(자사)
⑤ 보 유 기 간 : 보유기간 확인서상의 보유기간과 일치해야 함
⑥ 단위환매가 : 10,000원당 **세전단가**(환매단가)
⑦ 총환매금액 : 상환액면금액(고객예탁분 : 0)
⑧ 총발행가액 : 상환액면금액**(직접 입력)**(고객예탁분 : 0)
⑨ 총환매가액 : 10,000원당 세전단가 × 총환매금액 / 10,000 (고객예탁분 : 0)

– 단위발행가별 등록환매 신청금액

① 매출일자 : 공란
② 단위발행가 : 10,000.00
③ 환매금액 : 상환액면금액 ⇒ **추가**

□ 기 타

– D+1일에 제출된 보유기간확인서 내용대로 국채환매정보(Bok-Wire+)가 입력되므로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정보를 수정해야만 국채매입이 수행됨에 유의

– 매입가액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* 및 특별징수세액**(지방소득세)을 차감한 후 지급

*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2010.1.1.이후 보유기간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
** 「지방세법」(2015.1.1.시행)

– 한은금융망(BOK-Wire+) 마감시간을 감안하여 보유기간 확인서는 15시 00분까지 제출, 국채매입 신청은 15시 50분까지 완료

□ 보유기간확인서 작성시 참고사항

번호	신청 종목명	만기일
1	국고01250-2603-05	2026.03.10.
2	국고03250-2603-02	2026.03.10.
3	국고01875-2606-10	2026.06.10.
4	국고03125-2606-03	2026.06.10.
5	국고01750-2609-05	2026.09.10.
6	국고02375-2703-05	2027.03.10.
7	국고02375-2712-10	2027.12.10.
8	국고03250-2803-05	2028.03.10.

※ 필 독

Ⅰ. 소득세법 시행령

[시행 2016.9.23.] [대통령령 제27506호, 2016.9.22., 타법개정]

제22조의2(국채 등의 이자소득) ① 생략

② 생략

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(이하 "물가연동국고채"라 한다)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. <신설 2007.2.28., 2013.2.15., 2016.2.17.>

Ⅱ.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

<대통령령 제 24356호 2013.2.15.>

제4조(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

국고채권 매입 보유기간확인서[1)]

(2025년 11월 20일)

한국은행 금융업무국 귀중

인감대조	계인	검인

매입 회차	2025-005	고객번호	

대상증권[2)] 종목회차	낙찰 금리(%)	단위 낙찰가	낙찰액면 금액(억원)	채권 매입일[3)]	보유기간	소유[4)] 구분
합 계[5)]					—	—

위와 같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신고하오며, **보유기간에 대한 입증책임과 오류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책임(가산세 포함)은 신고기관에 있음**을 확인합니다.

신고기관 주 소 :

법 인 명 :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
성 명(대 표 자) : (인)[6)]

** 작성자 : . 연락처 :*

주 : 1) 낙찰일 익일 15시 00분까지 제출 (Fax: 02-759-4750, 4753, Tel :759-4740, 4754)

2) 종목회차 11자리 기재(예 : 국고채 04750-1309-10)

3)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고채권일 경우에만 기재

4) 법인세법 제120조(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)제①항에 따라<개정2011.12.31.>

소유구분은 자사분 1, 위탁분 2, 신탁분 3

5) 낙찰명세표의 기관별 합계액과 일치

6) 국채거래용 인감을 날인

7) ***보유기간 확인서 제출 후 국채매입 신청전 반드시 원천징수세액 먼저 확인요망***